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안)

2022. 3.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세부운용기준(이하 ‘본 기준’ 이라 한다)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약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품류 직접 제공 의제의 범위) ① 규약 제6조제3항제1호에서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라 함은 영업자가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와 영업자가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단독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약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라 함은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③ 규약 제6조제4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견본품의 표시) 규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 체험용 견본품 제공과 관련하여 영업자는 “견본품” 또는 “sample” 표기 시 제품의 최소 포장 단위에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행위의 대상) 규약 제8조제1항의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은 아래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협회가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제5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의 대상) 규약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관 또는 단체이거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더라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뜻한다.

1. 의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일 것
2. 운영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것
3.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것
4. 회비, 기타수입, 수입연구비용의 지출에 관한 재무, 회계의 규정을 갖고,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하는 각 의료기관 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계규정을 갖고, 수입은 오로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5.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있을 것
6. 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을 것
7.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학연구활동을 하고 있을 것
8. 의학연구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이 있을 것

9.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제6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신고 등)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을 지원한 경우 영업자는 반기별로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지원한 학술대회: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하반기에 지원한 학술대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제7조(제품설명회 지원내역 제출) ① 규약 제10조제1항의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금액기준은 세금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여비는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탑승권으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일반석 국내항공료·KTX·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2. 숙박은 1박 20만원 이내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4. 기념품은 5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규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개최한 기간에 따라 반기별로 협회에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 결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프로그램, 참석자명단 및 결산보고서 등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상반기에 개최한 제품설명회: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하반기에 개최한 제품설명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③ 영업자는 규약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 전문가 및 직원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최대 4회, 세금 포함)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세금 포함)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광고비·부스비 지급기준) 영업자는 규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영업자가 요양기관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과 형식은 종이문서 형태의 인쇄물이나 교육자료의 수준과 동등하여야 하고, 기존내용과 동일하거나 간단한 수정을 통해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
 - 가. 요양기관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을 위해 작성하여 다수 요양기관의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배포, 전시하는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 나.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이하 '학회등' 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다. 학회등이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자료(전자문서의 형태로 된 교육자료를 포함한다)
2. 영업자가 요양기관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보건의료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광고매체
 - 나. 요양기관이 제작한 광고매체(기관지, 연구잡지 등)로서 배포 대상이 광고매체를 제작한 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 및 당해 요양기관 종사자·이용객에 한하는 경우

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화 문서)로 제작한 광고매체

3. 영업자는 제1호 나목의 학회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연 1,000만원(세금 제외)의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세금 제외)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인쇄 또는 전자문서 광고매체의 경우에는 발행주체, 발행부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의 금액 한도 내에서 적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만원)(세금 제외)

발행기관	표2	표3	표1·표4	내지 또는 전자문서
요양기관	100	70	150	60
학회등	150	100	200	70

※ 1) 표1: 앞표지, 표2: 앞표지의 뒷면, 표3: 뒷표지의 뒷면, 표4: 뒷표지

2) 하나의 학회등이 복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들에 대한 광고비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영업자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학술대회별 부스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학술대회의 성격·규모·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나.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학술대회의 성격·규모·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연료·자문료 지급기준 등) ① 영업자는 규약 제12조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급할 강연료를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연에 참석하는 청중(강연자는 제외)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보건의료전문가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로 지급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 강연: 제1호의 강연료 상한금액과 청탁금지법의 강연료 상한금액이 상이한 경우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업자는 규약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연료 지급내역 신고 시 연간 지급 상한의 예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정당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규약 제12조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문에 따른 비용을 자문의 수준 및 정도, 자문자의 전문성, 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업무의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당 50만원, 연간 총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연구개발, 임상 등과 관련된 자문 등의 경우로서 위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 연간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문료는 영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요양기관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된다.

4.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강연의 경우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규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지급한 강연료 및 자문료: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제출

2. 하반기에 지급한 강연료 및 자문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제10조(의례·부조 등의 기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 규약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 위촉·임기 등) ① 규약 제14조의 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을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규약 제14조제3항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속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협회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제12조(의결권 행사 등) ① 위원회에 소속한 회원사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그 해당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재적수는 해당 위원수를 제외한 전체 위원수로 한다.

②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의 결정 없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지원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규약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이하 '실무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단은 위원회 의결 상정 전 안건 사전 검토 및 사전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실무단은 위원회에 소속된 자를 제외한 협회 임·직원 또는 회원사 중에서 선정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실무단은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성한다.

⑤ 실무단에 소속한 회원사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해당 회원사에서 선정된 실무단원은 그 안건에 관한 검토,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단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실무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① 협회는 규약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약 위반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내용 또는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영업자(이하

‘피신고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피신고자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서 또는 시정조치계획서 등의 답변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답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무단에 안전상정하고, 실무단은 확인서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하거나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실무단은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비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 또는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부과기준) 규약 제16조제1항에 따라 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가. 규약 위반의 내용이 단발적이고 경미하거나, 아직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조사 기간 중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2. 경징계

가. 규약위반 행위가 조직적·의도적이거나 반복적·계속적이지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 경고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중징계

가. 규약위반 행위가 조직적·의도적이거나 반복적·계속적이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나. 위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경징계 조치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제16조(면책) 영업자는 규약 및 본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 실무단원, 협회, 협회 임직원에게 대하여 법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회의 기록관리) ① 협회는 규약 제18조제1항제1호의 자료를 협회 임직원, 위원, 실무단원 또는 해당 영업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규약 제18조에 따른 자료의 관리 및 제출은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결정안 조치 등) ① 규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안을 통지받은 영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조치내용에 대한 수락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을 부과받은 영업자는 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결정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기준은 2022. 4. 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학술대회 개최 · 운영 지원 집행내역 신고서			
1. 사업자 정보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우편번호	
		팩 스	
담당자(성명)		직 위	
부 서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핸 드 폰	
2. 지원내용			
학술대회			
주최단체			
개최장소	(개최국)	(도시)	
개최일자			
지원일자		지원규모	원
지원내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1부. 3. 지원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증, 학술대회 현장사진 등) 1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세부운용기준」 제3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집행내역 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귀중			
※ 작성 및 제출방법			
1. 「지원내용」의 「학술대회」는 정식 학술대회 명칭, 「개최장소」는 개최국 및 도시를 기입합니다.			
2. 「지원내용」의 「지원일자」는 실제 지원 집행일자, 「지원내역」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기부금, 전시·광고, 기타 중 기재합니다.			
3. 신고서는 아래의 기간에 따라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가. 1월 ~ 6월에 지원한 학술대회: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나. 6월 ~ 12월에 지원한 학술대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접수처: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102호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 TEL: 031-628-0487 FAX: 031-628-2349

접수번호		접수일	
자사 제품설명회 지원 집행내역 신고서			
1. 사업자 정보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우편번호	
		팩 스	
담당자(성명)		직 위	
부 서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핸 드 폰	
2. 지원내용			
행 사 명		개최목적	
개최일시		개최장소	
총 참가인원	기관	명	
숙박인원	기관	명	숙박장소
숙 박 비	인 실		식사비(1인) 원
	원/박		기념품비(1인) 원
지원총액	원		교통비(1인) 원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1부 3. 행사프로그램 1부 4. 참석자명단, 제품설명회 현장사진 각 1부 5. 지출내역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 1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0조, 「세부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자사 제품설명회 지원 집행내역 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귀중			
※ 작성 및 제출방법			
1. 「지원내용」의 「개최목적」은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2. 「지원내용」의 모든 항목은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3. 「지원내용」의 「숙박비」는 1인당 1박 비용, 「식사비」, 「기념품비」, 「교통비」는 1인당 총 비용을 기입합니다.			
4. 신고서는 아래의 기간에 따라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가. 1월 ~ 6월에 개최한 제품설명회: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나. 7월 ~ 12월에 개최한 제품설명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접수처: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102호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 TEL: 031-628-0487 FAX: 031-628-2349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강연 · 자문 지원내역 신고서			
1. 사업자 정보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우편번호	
		팩 스	
담당자(성명)		직 위	
부 서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핸 드 폰	
2-1. 강연 지원내용			
행 사 명		목 적	
개최일시		개최장소	
강연자수	기관 명	강연참석자 수	명
지급총액			원
2-2. 자문 지원내용			
목 적			
자문자수	원	자문총액	원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1부 3. 지급증빙(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첨부) 1부 4. 강연 계약서 및 강연 아젠다 및 강연 현장사진 등 증빙(강연료 지급의 경우만) 1부 5. 자문계약서 및 자문내용 일부(자문료 지급의 경우만) 1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2조, 「세부운용기준」 제6조에 따른 강연·자문 지원내역 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귀중			
※ 작성 및 제출방법 1. 「강연 지원내용」의 「목적」은 제품설명회,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타 중 기재합니다. 2. 「자문 지원내용」의 「목적」은 제품설명회,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타 중 기재합니다. 3. 신고서는 아래의 기간에 따라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가. 1월 ~ 6월에 지급한 강연료 및 자문료: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나. 7월 ~ 12월에 지급한 강연료 및 자문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접수처: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102호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 TEL: 031-628-0487 FAX: 031-628-2349